

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**2010. 11. 26
행정건설위원회**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0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0년 11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세무2과장 이 용 근

가. 개정이유

동 전부개조례안은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3개법으로 분법되어 「2010. 3. 31 법률 제10221호」로 「지방세법」이 전부개정되어 2011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분법체계에 맞추어 우리 구의 구세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세무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개정내용

- (1) 자치구 상호간 조례명칭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조례」로 조례명 개정
- (2) 총 3장, 2절, 19개 조항 및 부칙으로 제1장 총칙, 제2장 등록면허세 중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,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, 제3장 재산세, 그 밖에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
- (3)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, 용어의 정의, 「마포구 구세 기본조례」 제5조에 따른 부과·징수의 위임사항을 등을 규정
- (4)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, 세율, 신고 및 납부 등을 규정
- (5)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, 납기, 비과세신청 등을 규정
- (6)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0조(세율)에서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, 별도합산과세대상, 분리과세대상 등 3개 항목으로 분류하였고 안 제11조 중과대상지역, 안 제12조 납기, 안 제13조~안 제15조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, 선박, 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사항, 안 제16조에서는 안 제13조~안 제15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,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 사항, 안 제19조는 납세관리인 지정 등을 규정
- (7)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일반적 적용례로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3조에서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

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.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-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는 새 「지방세법」의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「자치구 구세조례 등에 관한 표준안」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등록면허세의 구세 전환과 주민세(재산분), 지방소득세(종업원분)의 시세 전환 등 시·구간 세목교환에 따른 과세요건 및 부과·징수절차에 있어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관련 상위법인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법시행령」에도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